

[추경] 2026년도 시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추가 모집 공고

AI와 로봇 융합 기술을 통해 제조공정의 생산 고도화·자율화와 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전환(AI)을 촉진하고, AI로봇 활용모델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추경) 2026년 AI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조·서비스 현장에 AI로봇을 적용하여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공정 혁신 및 서비스 고도화 모델의 실증·확산 지원
- 사업내용
 - (제조 분야) 제조공정에 로봇, AI솔루션, 네트워크 등 AI 기반 로봇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정 자동화·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로봇 공정 구축 지원
 - (서비스 분야) 물류·농업·푸드테크 등 서비스 현장에 로봇·AI솔루션을 적용하여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서비스모델의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 지원

□ 지원분야

- (제조 분야)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기타 제조 업종 대상
- (서비스 분야) 물류·농업·푸드테크 등 서비스 현장에 AI 기반 로봇 솔루션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화 및 신규 서비스모델을 실증하는 분야

2. 예산규모 및 기간

□ (예산규모) 국비 총 20억원 내외(과제당 국비 5억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 제조·서비스분야 통합하여 선정하는 규모이며,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 (약 6개월)

【 (추경) 2026년 시로봇 실증사업(제조·서비스 분야) 】

지원내용	대상업종	전담기관	선정방식	공모주체	공고 예산규모
제조 분야	① 기계 ② 금속·플라스틱 ③ 자동차 ④ 전자·전기 ⑤ 선박·항공 ⑥ 섬유 ⑦ 식·음료 ⑧ 바이오·화학 ⑨ 기타제조	진흥원	공모 선정	진흥원	20억원 내외
	산업				
서비스 분야	① 농업 ② 물류 ③ 푸드테크 ④ 산업안전	진흥원	공모 선정	진흥원	20억원 내외
	사회				
	⑤ 국방 ⑥ 사회안전 ⑦ 재난대응 ⑧ 의료 ⑨ 복지 ⑩ 기타서비스 ⑪ 신기술·신산업				

3.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1. 제조 분야

- (지원대상) 제조환경 내 AI 로봇 실증 수행이 가능한 총괄기관(비영리), 주관기관(수요처), 참여기관(SI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수요발굴, 사업관리, 사업비 분배 및 집행, 자금매칭(상생협력금, 지방비) 등 사업수행 관리·지원
 - *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지원 추진체계 구성의 필수 사항은 아님
 - * 총괄주관기관이 존재하는 컨소시엄은 수요처가 세부주관기관이 되며, 총괄주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컨소시엄은 수요처가 주관기관임
 - 필수
 - ((세부)주관기관) 현장 적용, 도입 후 성공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로봇기반 AI 로봇 공정 구축 희망 수요기업
 - 필수
 - (참여기관) 기술지원(로봇, AI, 빅데이터 등) 및 설치·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
 - *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이 복수일 경우, 사업비 운용 및 컨소시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참여기관 대표기업(기관) 지정 필요
- (컨소시엄 구성) 제조환경 내 로봇 기반의 AI로봇 실증 수행이 가능한 (총괄)-수요-공급 또는 수요-공급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 (총괄주관기관) 모든 총괄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함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 ((세부)주관기관) 공정을 구축하여 운용 및 사용할 수요기업*으로 공정 설치될 부지(공장)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 (세부)주관기관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장
 - (참여기관) 로봇 또는 장비 제조사, SI기업 등으로 수요기업에 공정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일정 기간 제공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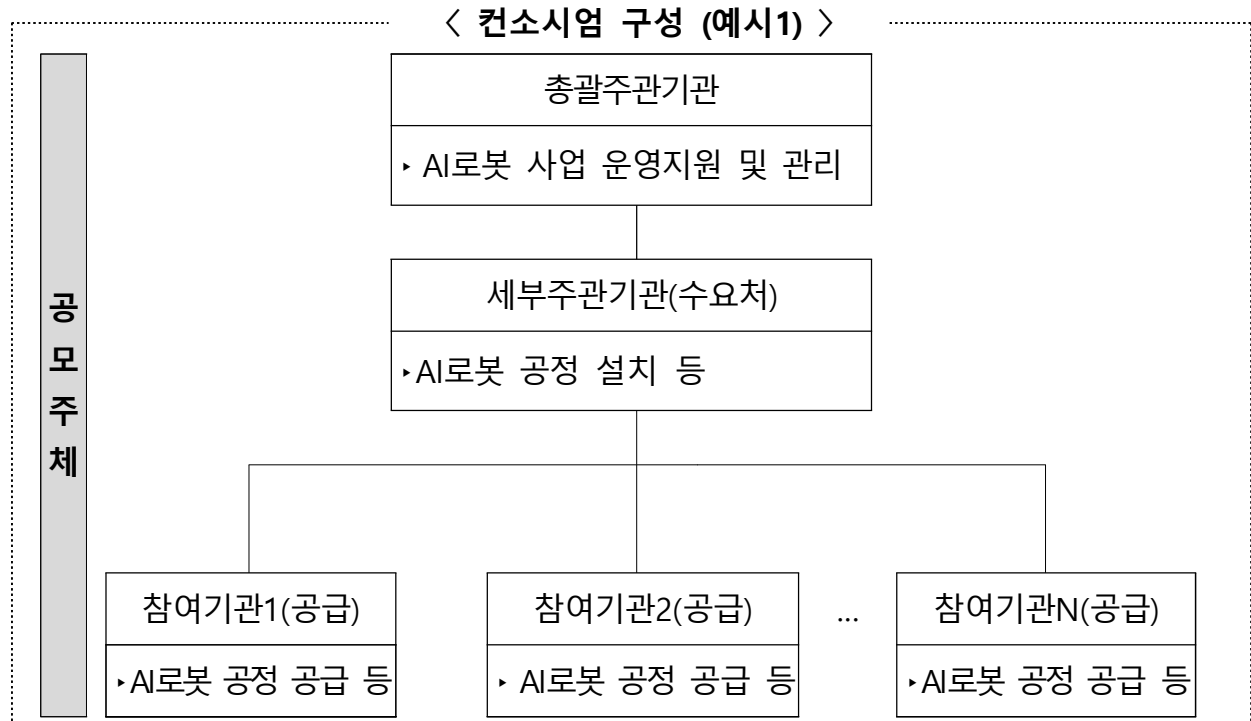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예시1.(총괄-세부-참여)

구분	대상	역할
총괄주관기관 (선택)	비영리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총괄)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 (제조로봇 실증)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지원 및 검증지원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세부주관기관	수요기업 (로봇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수검 ▪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조사 협조
참여기관	제조사 및 SI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로봇 설치) AI로봇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AI모델 구축) AI로봇 실증을 위한 AI모델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조사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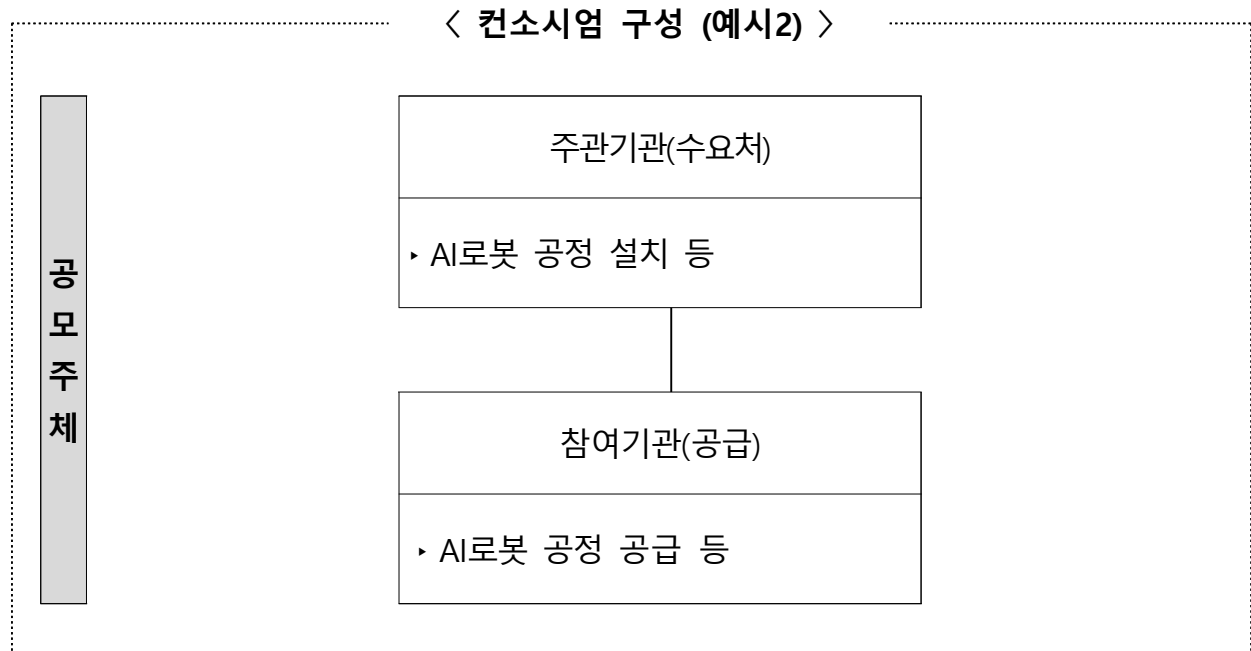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예시2.(주관-참여)

구분	대상	역할
주관기관	수요기업 (로봇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로봇 도입) 공정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제조로봇 실증)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지원 및 검증지원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수검 ▪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참여기관	제조사 및 SI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로봇 설치) AI로봇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AI모델 구축) AI로봇 실증을 위한 AI모델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조사 협조

○ (구성 예시1) 총괄-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 (구성 예시2)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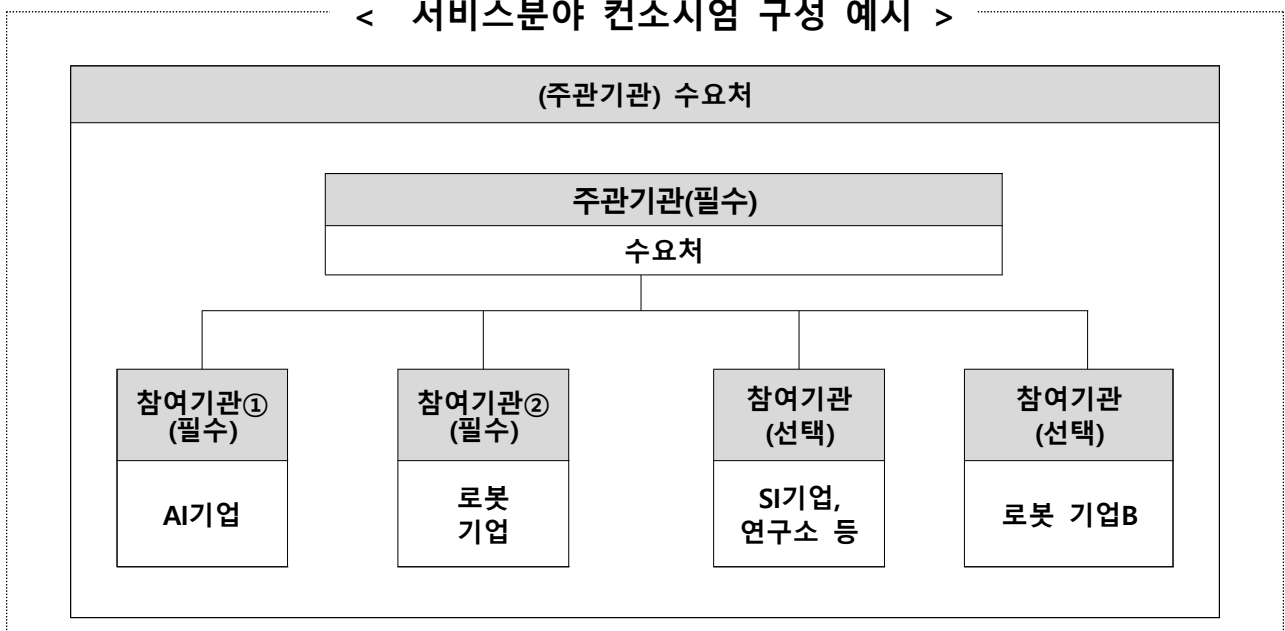
2. 서비스 분야

- (지원대상) 서비스 현장에 AI 기반 로봇 솔루션 적용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처, 로봇기업, AI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서비스로봇 도입 수요처로서 실증장소 확보, 로봇 운영·관리, 실증목표 달성 및 성과활용 총괄
 - (참여기관) 로봇기업 및 AI기업으로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시한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로봇·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 연계·현장 적용·실증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AI기업, SI기업, 로봇기업 등)
 - * 컨소시엄은 법인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컨소시엄 구성)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AI 기업을 필수로 포함하여 구성

구분		① AI 자율제조 도입형 및 ② 서비스로봇·AI 융합형
컨소시엄	주관기관	수요처(필수)*
	참여기관	AI기업(필수), 로봇기업(필수), SI기업(선택), 연구소(선택) 등

* 원칙적으로 수요처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과제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AI·로봇기업의 주관기관 수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함(해당 경우 수요처 등은 참여기관으로 필수 구성)

< 서비스분야 컨소시엄 구성 예시 >



4. 지원규모 및 내용

1. 제조 분야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 제조로봇, 네트워크, 디지털트윈, AI 솔루션 등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 (실증) AI 로봇 구축을 위한 로봇 자동화 구축,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검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자동화 구축

2. 서비스 분야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주관기관에게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AI솔루션 적용 비용,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제작비·구매비, 커스터마이징,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 (지원유형) AI 자율제조 도입형, 서비스로봇·AI 융합형 2-track 으로 지원

① AI 자율제조 도입형	② 서비스로봇·AI 융합형
· M.AX를 통해 검증된 AI 기반 자율제조 솔루션을 서비스현장에 투입하여 현장 애로 해소 지원	· 서비스로봇과 AI솔루션이 융합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실증

5. 사업비 편성

- (편성기준) 사업비(직접비·간접비) 편성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고문상 별도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1. 제조 분야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및 (세부)주관기관 '공정구축비'로 편성하며, 공정구축비는 국비 최대 50% 이내, 민간부담금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

< 사업비 구성 비율 예시 >

구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B)	기타매칭금 (C)	총사업비 (A+B+C)
사업운영관리비 (총괄주관기관)	최대 0.5억원 이내 (공정구축비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공정구축비 ((세부)주관기관)	50% 이내	50% 이상 자율매칭**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지방비, 상생협력금**)		100%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등의 합은 공정 구축비와 같아야 함.

** 상생협력금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을 의미함.

- (사업운영관리비)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세부주관기관)의 공정 구축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직접비·간접비) 편성

< 총괄주관기관 관리비 편성기준 >

구분	편성기준				
사업운영 관리비 (총괄주관기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컨소시엄 세부주관기관 공정구축비(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공정구축비와 별도로 전담기관에서 지급 ○ 전액 정부출연금(국비) 편성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사업운영 관리비	직접비	인건비	운영관리비의 40% 이내	
			연구활동비	수수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공고문 11p 참고 - (이행보증보험) 공고문 11p 참고
		그 외 세세목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간접비	직접비(현물 제외)의 7%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 내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수당 책정 불가 * (위탁정산 수수료) 총괄주관기관이 존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에서 일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하여야 함 					

- (공정구축비)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으로 매칭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인건비) 매칭 가능(선택사항)
- 현물 산정시 본 사업의 수행(로봇 및 솔루션 개발, 도입 및 실증 등)에 투입되는 (세부)주관기관의 인건비로만 구성 가능

< 공정구축비 구성(예) >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합계(100%)	비고	
	정부출연금(50%)	민간부담금(50%)			
공정구축비	5억원	현금(80%)	(인건비)현물(20%)	10억원	-
		4억원	1억원		

* 십만원 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 공정구축비는 로봇, 네트워크, 관제, 디지털 트윈, AI, 기타설비 등 AI로봇 공정 구축을 위한 제반비용 편성

<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

구분	편성기준				
공정구축비 (세부)주관기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복수공정 지원 가능, 동종복수공정 지원 불가 (예시) A공정+B공정+C공정 = 지원 가능, A공정+A공정+A공정 = 지원 불가 				
	<p align="center">< AI로봇 공정구축비 구성내역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I로봇 로봇공정 설치비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내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시스템 - 로봇 + 주변장치 + SW + 기타 설비·장치 등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해당시), 이행보증보험(필수) - (위탁정산수수료) 공고문 11p 참고 - (이행보증보험) 공고문 11p 참고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 공정도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부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편성) * (위탁정산 수수료) 총괄주관기관이 존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에서 일괄 위탁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위탁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함 * KPI 감리 수수료 및 안전인증 수수료는 전담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부담 	구분	AI로봇 로봇공정 설치비용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시스템 - 로봇 + 주변장치 + SW + 기타 설비·장치 등
구분	AI로봇 로봇공정 설치비용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시스템 - 로봇 + 주변장치 + SW + 기타 설비·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해당시), 이행보증보험(필수) - (위탁정산수수료) 공고문 11p 참고 - (이행보증보험) 공고문 11p 참고 				

2. 서비스 분야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 50%, 민간부담금 최소 50%로 편성 및 주관기관에 지급됨

구분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총사업비(100%)	
				민간부담금	국비
① AI 자율제조 도입형 및 ② 서비스로봇·AI 융합형	• 주관기관(수요처 등) • 참여기관(로봇기업 등)	선택	0%~50%	50%	50%

* 민간부담금 내 지방비 출자 가능하며, 과제 신청시 '지방비 납입 약속서' 제출 필수

- (민간부담금 구성)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소 50%이며, 민간 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인건비)* 매칭 가능

* 인건비는 본 사업의 수행(로봇 및 솔루션 개발, 도입 및 실증 등)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의 인건비로 구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은 주관기관만 가능함 (참여기관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사업비 편성기준 >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비고
직접 사업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가능(민간부담금의 20% 이내) 	선택	민간 부담금의 20%이내 (현물)
	연구시설·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구매(또는 제작), AI솔루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가격) 로봇 HW, SW, AI 솔루션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 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 	필수	총사업비의 70%이상 (현금)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등 관련 부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구입 등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필수	총사업비의 10%이내 (현금)
	연구 활동비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 공고문 11p 참고 - (이행보증보험) 공고문 11p 참고 	필수	총사업비의 20%이내 (현금)
그 외 세세목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선택		
간접 사업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지원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정부부처, 지자체,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직접비의 5%이내 (현금)

참고1**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산정 기준**

- (필수사항)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정산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	300,000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주관기관)이 정산 대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비(현금) 활용 기관 필수 발급
 -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3개월('27.3.31.)

6.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 지원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평가절차 조정 가능(조정 시, 개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 '사전지원제외' 대상 제외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심의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필요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 통과 과제 중 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최종 과제 선정 - 최종 사업비 결정

* 모든 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1단계 서면평가를 통해 2단계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1단계·2단계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1. 제조 분야

□ 평가기준

- (①단계 서면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로봇 활용성, 사업 수행역량, AI 활용성, 데이터 활용성 등을 서면 평가로 진행

< 서면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추진 계획	목표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의 구체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 실증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20
	실현 가능성		20
	예산의 적정성		5
	지역적 파급효과		5
로봇	로봇 활용성	◦ 로봇 첨단화 및 로봇 활용 규모	30
수행역량	기관·기업의 전문성	◦ 자동화 및 AI 사업화 실적	5
	인력의 전문성	◦ 추진체계의 역할분담 및 전문인력 보유	5
AI 및 데이터	AI 도전성	◦ 공정 데이터 활용성 및 인공지능 솔루션의 적정성	5
	데이터 활용성		5
가점	AI팩토리 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팩토리 전문기업* 참여시 가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AI팩토리 전문기업 	+1
	국산 로봇부품 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핵심기술* 기반 국산 로봇부품 탑재 *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1
	로봇 구축비율	◦ 공정구축비의 30% 이상 로봇구축	+1
	방산기업	◦ 수요기업이 방산기업인 경우	+1
합 계			100(+4)

- (②단계 발표평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 책임자 역량, AI적용 합리성 등에 대해 (세부)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

< 발표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수행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기업의 공정구축 의지 및 필요성 ◦ 사업비 산출배분의 합리성 ◦ 실증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20
	사업수행 필요성		20
	예산 적정성		15
	지역적 파급효과		5
수행역량	사업관리 역량	◦ 사업관리 방법 및 책임자의 전문성	15
	프로세스의 구체성		15
AI 활용	AI 실효성	◦ 인공지능 솔루션의 합리성	10
가점	AI팩토리 전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팩토리 전문기업* 참여시 가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AI팩토리 전문기업 	+1
	지방비	◦ 공정구축비의 지방비 매칭	+1
	상생협력금	◦ 대·중견기업의 상생협력금 매칭	+1
합 계			100(+3)

< 상생협력금 매칭 기준 >

구분	기준
자금 매칭	◦ (세부)주관기관 공정구축비 중 일부를 현금 매칭하는 경우

* (세부)주관기관은 상생협력 출자 기업과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함

* 상생협력금 출자 기업의 자금 매칭 확약서 제출(별첨확인)

< 방산기업 기준 >

구분	기준	증빙서류
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6091호, 2026-02-19]에 따라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기업	방산업체 지정 확인 서류
국방품질 경영체제 인증 (DQMS)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실행·유지하여 인증받은 기업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방산업체 납품 실적 기타	◦ 방산업체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업에 방산관련 물자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 ◦ 방산분야 제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납품실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자유양식

* 위 방산기업 구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에 한해 방산기업으로 인정

2. 서비스 분야

- (①단계 서면평가) 서면평가 기준표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심의 진행

< 서면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목표 및 실증 내용(30)	· 실증 목표 및 시나리오의 명확성 및 도전성	20
	· 실증 환경(수요처)의 준비성 및 적합성	10
실증 로봇, AI 및 시스템(30)	· 실증 로봇 및 로봇 기술(H/W, S/W)의 성능·안전성 확보 여부 및 실증 적합성·부합성	10
	· AI 솔루션의 혁신성 및 완성도	10
	·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체계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 역량(20)	· 주관·참여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10
	· 투입 인력의 전문성	10
기대 효과 및 확산 계획(20)	· 성과활용 기간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10
	·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비용 절감, 인력 부족 해결 등)	5
	· 지역파급효과(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적정성, 지역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5
합 계		100

- (2단계 발표평가)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 실시

< 발표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목적의 부합성(1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목표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 사업 기간 중 로봇 실증 및 실현 가능성	10
	·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지역파급효과(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적정성, 지역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5
수요처의 수행능력(20)	·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 능력, 기대효과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5)	· 로봇 기술 역량 및 사업 운영 능력	10
	· AI·로봇 시스템 통합 기술 역량	10
	· 교육, 유지보수 등 지원 역량	5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10)	·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5
	·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사업비의 적정성(5)	·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5
합 계		100

3. 공통사항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하며, 현장심사 시 별도 탈락 과제 無
 -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 (4단계 최종평가) 1·2·3단계 평가결과 및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7.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공통)

□ 신청자격

-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수행기관이 로봇산업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된 경우
 - * 그 외 사항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8. 신청기간 및 방법(공통)

□ (공고기간) '26. 6. 11.(목) ~ '25. 6. 30.(화), 15:00까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실증 기간 확보를 위해 공고 기간 단축

○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 (접수기간) '26. 6. 24.(수) ~ '26. 6. 30.(화), 15: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접수 주체) 제조분야는 (총괄)주관기관이, 서비스 분야는 주관기관이 접수

○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사업내용 관련 문의

담당	팀	담당자	직책	전화번호	메일
제조 분야	산업제조실증팀	장현석	책임	053-210-9512	hsjang@kiria.org
	산업제조실증팀	한보라	선임	053-210-9518	han53@kiria.org
서비스 분야	서비스로봇실증팀	도가이	책임	053-210-9673	gayi310@kiria.org
	서비스로봇실증팀	배지훈	책임	053-210-9674	bjh1991@kiria.org

○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 070-4047-7287 / 사업총괄팀 이용래 수석 053-210-9572

○ 주의사항

- ①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1. 제조 분야

구분	제출서류	양식 제공 여부	제출 여부	비고	제출 방법	
1	사업계획서 (HWP 파일 1부, PDF 파일 1부 총 2부)	○	○	한글, PDF 각1부	(PMS) 온라인 접수	
2	AI로봇 실증사업 시스템 구성도 및 AI 적용 프로세스(PPT)	○	○	1부(PPT)		
3	로봇시스템 도입 건적서 - 참여기관(공급기업) 대표자 날인 필수	X	○	기관별 각 1부(PDF) 를 압축파일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	기관별 각 1부(PDF) 를 압축파일로 제출		
5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 (표지 포함) ※ 비영리기관 제외	X	○	기관별 각 1부(PDF) 를 압축파일로 제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X	○	기관별 각 1부(PDF) 를 압축파일로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X	○	기관별 각 1부(PDF) 를 압축파일로 제출		
8	과제 참여인력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원본 컬러 스캔본(PDF)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원본 컬러 스캔본(PDF)		
10	참여의사 협약서	○	○	원본 컬러 스캔본(PDF)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	X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모두 제출		
12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협약서	○	○	원본 컬러 스캔본(PDF)		
13	지자체부담 현금(지방비) 출자 협약서 - 지방비 매칭 시 제출(납입 예정일 명시)	○	해당시	원본 컬러 스캔본(PDF)		
14	상생협력금 현금 출자 협약서 - 상생협력자금 매칭 시 제출(납입 예정일 명시)	○	해당시	원본 컬러 스캔본(PDF)		
15	방산기업 증빙 자료	X	해당시	원본 컬러 스캔본(PDF)		
16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	○	해당시	원본 컬러 스캔본(PDF)		
17	AI팩토리 전문기업 확인서	X	해당시	한국산업기술기획 평가원 발급서류 스캔본(PDF)		(PMS) 온라인 접수
18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시)	발표자료 PPT 1부	-	○	서류평가 통과 기관 대상 (별도 안내)	별도 제출
		공정 설명 및 시스템 설계 설명 3분 이내 영상(MP4)(발표평가시 제출)	-	○		

* 회계관련 직전년도('25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3년, '24년 자료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PMS 시스템 제출 시 파일 업로드 개수 제한(최대 1개) 시 압축(ZIP) 파일로 제출

2. 서비스 분야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 ¹⁾	1	사업계획서		○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	○	○	양식 4
	5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²⁾	○	○	○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	○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
	8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³⁾	-	○	○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	○	-
	12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	-
	1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⁴⁾	○	○	○	양식 7
	15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	○	○	양식 8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	양식 9
해당 시 제출	1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확약서 ⁵⁾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해당시)
	2	지방비 납입 확약서	○	-	-	양식 11(해당 시)

-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 될 수 있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
(민간부담금의 20%). 인건비 현물 매칭 시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5년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3년, '24년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NTIS 제재정보 검색 방법(로그인 필요) : NTIS 홈페이지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 참여제한 여부 개별 조회 후 결과 PDF 저장
* 조회 대상기관 : ①주관기관 ②참여기관 [소속기관 제재 확인(별도 신청 필요)]
* 조회 대상인물 : ①주관기관의 장 ②참여기관의 장 ③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본인제재확인 - 제재정보 확인서 다운로드]
 -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10. 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6. 6. 11 ~ 6. 30. (20일간)	· 사업공고 개시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접수		'25. 6. 24. ~ 6. 30. 15:00 까지(7일간)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	신청기관→진흥원
↓				
사전검토위원회		'26. 7월 1주차	· 필수서류 제출 여부 검토 · 재무건전성 평가	신청기관→진흥원
↓				
1단계	서면평가	'26. 7월 1~2주차	· 사전검토 통과 과제 대상 사업계획서 심의	진흥원 평가위원회
↓				
2단계	발표평가	'26. 7월 3주차	·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3단계	현장심사 (필요시)	'26. 7월 3주차	· 발표평가 통과과제 중,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필요과제 대상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				
4단계	최종평가	'26. 7월 3주차	·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26. 7월 4주차	·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진흥원→선정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6. 7월 5주차	·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흥원↔선정기관

※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재무평가 기준표 >

구분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1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공통)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6.2.13.)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2026년 AI로봇 실증사업 Q&A (별첨 참고)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
- 사업계획서 제공 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주체 외의 하도급을 통한 주요한 사업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을 발주한 원사업자에게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업비 전용 계좌 신설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될 수 있음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협약 기간중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컨소시엄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및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공급기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증빙자료 등)은 사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컨소시엄 전체)은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렌탈 등)은 불가함
 - 수행기관·기업은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AI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 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